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333호

**영등포구 신길동 1300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
공급촉진지구 지정·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
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· 지형도면 고시**
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2조 및 제33조,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영등포구 신길동 1300번지 일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,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, 같은 법 제26조, 제28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또한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 규정에 따라 영등포구 신길동 1300번지 일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2년 8월 4일
서울특별시 장

I.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

1. 촉진지구의 명칭, 위치 및 면적

- 명 칭 : 영등포구 신길동 1300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
공급촉진지구
- 위 치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300번지 일원
- 면 적 : 1,452.4㎡

2. 촉진지구 지정일 : 2022년 8월 4일

3. 사업의 종류 :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

4. 시행자의 명칭,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

- 명 칭 : 정오개발주식회사 외 4인
- 대표자 성명 : 정오개발주식회사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12 (무교동)
- 법인등록번호 : 110111-0050693

5.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·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면적,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명칭) 및 주소

가. 토지세목조서

연번	소재지			지목	면적(㎡)	용도지역 및 지구	소유자	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	비고
	행정동	지번			편입 면적		성명	주소	지분	권리명세	권리자	주소	
		본번	부번										
1	신길동	1300	-	대	1,449.4	제2종일반주거지역, 일반상업지역	정오개발 주식회사	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12(무교동)	1,380.25	-	-	-	-
2							강주형	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 13, 102동 604호	8.72	-	-	-	-
3							서형수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1길 1, 디동 502호	8.72	-	-	-	-
4							박종진	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0, 대치동 개포2차 우성아파트 15동 402호	20.65	-	-	-	-
5							박지성	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222, 대치동 대치 아이파크 108동 2003호	31.06	-	-	-	-
6		1304	3	대	3.0	제2종일반주거지역	정오개발 주식회사	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12(무교동)	100%	-	-	-	-
합계					1,452.4								

나. 물건조서

연번	소재지			지목	물건의 종류	구조	규모		소유자	관계인			관련 지번
	행정동	지번					연면적 (㎡)	층수 (지하/ 지상)		성명 또는 명칭	주소	권리 종류 및 내용	
		본번	부번										
1	신길동	1300	-	대	건물 (사무실) (점포)	철근 콘크리트조	5,582.81	2/6	정오개발주 외 4인	-	-	-	-
합계							5,582.81	-					

6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: 신설

구분	구역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신설	영등포구 신길동 1300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(역세권 청년주택) 지구단위계획구역	영등포구 신길동 1300번지 일원	-	증)1,452.4	1,452.4	-

－ 결정사유서

도면표 시번호	위 치	위 치	면적(㎡)	결정(변경)사유
-	영등포구 신길동 1300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(역세권 청년주택) 지구단위계획구역	영등포구 신길동 1300번지 일원	1,452.4	• 「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여건이 우수한 대상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함.

나.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	면 적(㎡)			구성비(%)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총계		1,452.4	-	1,452.4	100.0	
주거지역	제2종일반주거지역	1,172.7	감) 1,172.7	-	-	
상업지역	근린상업지역	-	증) 1,172.7	1,172.7	80.7	
	일반상업지역	279.7	-	279.7	19.3	

－ 변경사유서

도면표 시번호	위 치	용도지역		면적(㎡)	결정(변경)사유
		기정	변경		
-	영등포구 신길동 1300번지 일원	제2종일반 주거지역	근린 상업지역	1,172.7	•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에 의거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.

7.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: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주택공급과(☎02-2133-6296) 및 영등포구청 건축과(☎02-2670-3060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함

II.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

1. 지구계획의 개요

- 명 칭 : 영등포구 신길동 1300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
공급촉진지구
- 위 치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300번지 일원
- 면 적 : 1,452.4㎡
-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
: 대방역 역세권 지역에 대학생·사회초년생·신혼부부 등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을 건설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촉진지구 지정

2. 사업시행자의 명칭,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

- 명 칭 : 정오개발주식회사 외 4인
- 대표자 성명 : 정오개발주식회사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12 (무교동)
- 법인등록번호 : 110111-0050693

3. 사업시행기간 및 재원조달계획

- 사업시행기간 : 2022년 ~ 2025년
- 재원조달계획 : 자기자본(사업비 일부), PF대출(공사비 등)

4. 토지이용계획

구 분	면 적(㎡)	구성비(%)	비 고
주택건설용지	1,452.4	100.0	임대주택
합 계	1,452.4	100.0	

※ 추후 측정성과 등에 의해 변경 가능

5. 인구·주택 수용계획

- 가. 수용인구 : 약 362인
- 나. 주택건설계획 : 281세대

구분			세대수 (세대)	가구당 인구수(인)	수용인(인)	비 율(%)	비고
공공임대 주택	공공임대 주택	25A TYPE	9	1	9	2.49	
		25B TYPE	13	1	13	3.59	
		25C TYPE	38	1	38	10.50	
		25D TYPE	25	1	25	6.91	
		32 TYPE	2	1	2	0.55	

구분			세대수 (세대)	가구당 인구수(인)	수용인(인)	비 율(%)	비고
		50 TYPE	11	2.65	29.15	8.06	
		51A TYPE	2	2.65	5.3	1.46	
		51B TYPE	2	2.65	5.3	1.46	
		51C TYPE	2	2.65	5.3	1.46	
		계	104	-	132.05	36.49	
	SH 선매입	25C TYPE	8	1	8	2.21	
		계	8	-	8	2.21	
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	25A TYPE	15	1	15	4.15		
	25B TYPE	23	1	23	6.36		
	25C TYPE	62	1	62	17.13		
	25D TYPE	35	1	35	9.67		
	32 TYPE	2	1	2	0.55		
	50 TYPE	17	2.65	45.05	12.45		
	51A TYPE	5	2.65	13.25	3.66		
	51B TYPE	5	2.65	13.25	3.66		
	51C TYPE	5	2.65	13.25	3.66		
	계	169	-	221.8	61.30		
합계			281	-	361.85	100.00	세대당 1.29인

※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「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」의 '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'을 적용

6. 교통·공공·문화·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: 해당사항 없음

7.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

가. 환경보전계획

1) 생태면적 확보 및 녹지네트워크 조성

-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(자연의 순환기능)을 증대시키기 위해 녹지(자연지반녹지, 인공지반녹지) 조성, 생태면적을 확대를 위해 녹지공간 최대한 확보
- 대상지 내 일부 식재된 조경수목 외 자연녹지는 거의 없어 주변지역의 조경수목에 의한 녹지의 연결이 매우 빈약한 상태로, 단지 내 주차 수요를 지하주차장에서 수용하는 등 지상부에 조경녹지, 옥상정원 등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복합 환경 창출

2) 환경오염 저감계획

- 공사 시 공정별 오염물질발생원을 성상별, 종류별로 분리하고, 서울특별시 및 영등포구의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처리지침에 따르도록 하며, 각종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계획·설치하여 각 공사단계별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이행

나. 탄소저감계획

- 탄소저감을 위해 사업지구 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(자연지반녹지, 인공지반녹지, 옥상녹화 등) 하고, 녹지공간 내 조경식재 시 배기가스에 강하고 환경정화능력이 강한 수종을 식재토록 하여 대기질 정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계획함.
- 대상지 내 녹지 및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로폭원을 적정하게 조성하여 보행, 자전거 등을 통한 녹색교통이 활성화되도록 계획
- 나눔카 등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유도
- 운영 시 난방연료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열손실방지를 위해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함.

8.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: [붙임] 도면게재생략

[붙임]

1. 도시·군관리계획

가.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(변경)사항

1)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	면 적(㎡)			구성비(%)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총계		1,452.4	-	1,452.4	100.0	
주거지역	제2종일반주거지역	1,172.7	감) 1,172.7	-	-	
상업지역	근린상업지역	-	증) 1,172.7	1,172.7	80.7	
	일반상업지역	279.7	-	279.7	19.3	

- 변경사유서

도면표 시번호	위치	용도지역		면적(㎡)	결정(변경)사유
		기정	변경		
-	영등포구 신길동 1300번지 일원	제2종일반 주거지역	근린 상업지역	1,172.7	•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에 의거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.

2)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(기정/변경) : [붙임]

2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조서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

1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: 신설

구분	구역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신설	영등포구 신길동 1300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(역세권 청년주택) 지구단위계획구역	영등포구 신길동 1300번지 일원	-	증)1,452.4	1,452.4	-

- 결정사유서

도면표 시번호	위치	위치	면적(㎡)	결정(변경)사유
-	영등포구 신길동 1300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(역세권 청년주택) 지구단위계획구역	영등포구 신길동 1300번지 일원	1,452.4	• 「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여건이 우수한 대상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함.

2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: [붙임]

나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

1)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

가) 용도지역 결정조서 : 변경

구 분		면 적(㎡)			구성비(%)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총계		1,452.4	-	1,452.4	100.0	
주거지역	제2종일반주거지역	1,172.7	감) 1,172.7	-	-	
상업지역	근린상업지역	-	증) 1,172.7	1,172.7	80.7	
	일반상업지역	279.7	-	279.7	19.3	

나) 용도지구 결정조서 : 해당사항 없음

2)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다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

1)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

가)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: 신설

도면 표시번호	가구 번호	면적(㎡)	획지			비고
			획지번호	위치	면적(㎡)	
-	-	1,452.4	①	영등포구 신길동 1300	1,449.4	-
				영등포구 신길동 1304-3	3.0	-

- 결정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결정내용	결정사유
-	•신길동 1300, 1304-3 획지 결정 - 면적 : 1,452.4㎡	•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획지계획

2)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조서

도면 표시번호	가구번호	위치	면적	계획내용	비고
-	-	신길동 1300, 신길동 1304-3	1,452.4㎡	공동개발(지정)	-

- 결정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결정내용	결정사유
-	•신길동 1300, 1304-3 공동개발(지정) 결정 - 면적 : 1,452.4㎡	•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공동개발(지정) 결정

라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사항

(1)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: 신설

구 분	계획내용	비고
지정용도	•공동주택(주거복합)^{주1)} ※단,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까지 비주거용도 설치 가능	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른 용도 계획
불허용도	•단독주택 및 공동주택(단, 주거복합 제외) •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사술소 •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•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•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•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,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•수련시설 •위락시설 •공장 •창고시설 •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•자동차 관련 시설(단, 주차장 제외) •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•자원순환 관련 시설 •교정 및 군사 시설 •발전시설 •묘지 관련 시설 •야영장 시설 •장례시설	

주1) 공동주택은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청년주택에 한하며,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

－ 결정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변경내용	결정사유
-	•지정용도, 불허용도 신설	•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건립이 가능한 용도를 지정용도로 결정 •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근거하여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

(2)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: 신설

구 분	계획내용	비고
건폐율	•60% 이하	-
용적률	•기본용적률 : 628.58% 이하^{주1)} •상한용적률 : 893.95% 이하	•기본용적률 가중평균 : $(540\% \times 1,172.7\text{㎡} + 1,000\% \times 279.7\text{㎡}) \div 1,452.4\text{㎡}$ - 제2종일반주거지역→근린상업지역:540%, 일반상업지역(변경없음):1,000%
높이	•최고높이 : 75m 이하 ^{주2)}	

주1)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의 용적률 기준 준용(가중평균)

주2)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5호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

(3) 용적률 적용기준(의무 사항)

구분	적용기준	계획사항		완화내용																				
공공 기여율	●기본공공기여율 : 대지면적의 22.88% 이상 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제2종</th><th>일반상업</th><th>계</th></tr><tr><td>면적</td><td>1,172.7㎡</td><td>279.7㎡</td><td>1,452.4㎡</td></tr><tr><td>기본용적률</td><td>540%</td><td>1000%</td><td>628.58%</td></tr><tr><td>공공기여율</td><td>25%</td><td>14%</td><td>22.88%</td></tr><tr><td>공공기여면적</td><td>293.16㎡</td><td>39.15㎡</td><td>332.31㎡</td></tr></table>	구분	제2종	일반상업	계	면적	1,172.7㎡	279.7㎡	1,452.4㎡	기본용적률	540%	1000%	628.58%	공공기여율	25%	14%	22.88%	공공기여면적	293.16㎡	39.15㎡	332.31㎡	① 기본공공기여율 [55세대] : 335.66㎡ (23.11%)	③ 총 281세대 중 공공임대 주 택 104세대 공공기여	기본 용적률 628.58%, 상한 용적률 893.95% 부여 /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함
	구분	제2종	일반상업	계																				
면적	1,172.7㎡	279.7㎡	1,452.4㎡																					
기본용적률	540%	1000%	628.58%																					
공공기여율	25%	14%	22.88%																					
공공기여면적	293.16㎡	39.15㎡	332.31㎡																					
	●완화용적률(265.37%)의 50%에 해당하는 공공임대 주택 추가 제공 - 132.69%(1,927.18㎡) 이상	② 추가공공기여율 : 132.70% [49세대] - 공공임대주택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: 1,927.36㎡ (132.70%) 부속토지 환산면적 : 214.80㎡ (14.78%)																						
비주거 비율	●10%이상, 20%이하 (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)	●주거 : 비주거 = 88.47% : 11.53%																						
주택규모	●주택 건설규모 : 전용면적 18㎡ ~ 60㎡ - 1인(세어형 포함) 세대 : 전용 18㎡ 이상 - 2인 이상 세대 : 전용 36㎡ 이상	●공공임대주택 : 104세대 - 25Atype(9세대), 25Btype(13세대), 25Ctype(38세대), 25Dtype(25세대), 32type(2세대), 50type(11세대), 51Atype(2세대), 51Btype(2세대), 51Ctype(2세대) ●SH공사 선매입 : 8세대 - 25Ctype(8세대) ●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: 169대 - 25Atype(15세대), 25Btype(23세대), 25Ctype(62세대), 25Dtype(35세대), 32type(2대), 50type(17세대), 51Atype(5 세대), 51Btype(5세대), 51Ctype(5세대)																						
건축물 형태	●2가지 이상 의무 이행 -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-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- 에너지 효율 건축물 - 친환경 건축물 - 공공시설물 설치 - 「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」에 규정한 발코니 설치	●친환경 건축물 ●에너지 효율 건축물																						
주민 공동시설 (커뮤니티시설)	●100호 이상 ~ 300호 미만 : 150㎡ 이상	●364.92㎡ 계획 (지상 3층)																						

※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 적용

— 결정사유서

도면번호	변경사유
-	●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을 적용함

(4)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결정조서

구분		계획내용	비고
건축 한계선	영등포로, 여의대방로변(간선부)	3m	결정도참조
	여의대방로55길변(이면부)	2m	

- 결정사유서

구분	결정내용	결정사유
신설	●건축한계선 신설 - 영등포로, 여의대방로변 3m - 여의대방로55길변 2m	●원활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한계선 결정

(5) 차량출입불허구간 결정조서

구분	계획내용	비고
차량출입불허구간	●영등포로(35m), 여의대방로변(40m)	결정도 참조

- 결정사유서

구분	결정내용	결정사유
신설	●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- 영등포로(35m), 여의대방로변(40m)	●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차량출입불허구간 결정

마.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

(1)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: 신설

구분		계획내용	비고
대지내 공지	보도형 전면공지	●영등포로, 여의대방로변 건축한계선(3m)	결정도 참조
		●여의대방로55길변 건축한계선(2m)	

- 결정사유서

구분	결정내용	결정사유
신설	●전면공지 신설	●인접 도로변의 원활한 보행환경 조성 및 차량 진출입로 계획을 위해 전면공지 결정

(2) 공공기여에 관한 결정조서 : 신설

구 분	용적률	용적률	공공기여 기준	계획내용	비고
공공임대주택	기본용적률 (부지면적)	628.58% 이하 (가중평균)	●부지면적 기준 22.88% 이상 (부지면적 332.31㎡ 이상)	●부지면적 기준 335.66㎡(23.11%) -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: 1,290.53㎡ (55세대)	총 281세대 중 공공임대 주택 104세대 계획
	상한용적률 (연면적)	893.95% 이하	●기본용적률(628.58%)에서 완화되는 용적률의 50% 이상 - $(893.95\% - 628.58\%) / 2 \times 1,452.4\text{㎡}$ = 1,927.18㎡ (연면적 1,927.18㎡ 이상)	●공공임대주택 제공 연면적 : 1,927.36㎡ (49세대)	

- ※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,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함
 ※ 상기 계획내용은 관련 지침 적용기준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

3.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: 해당 없음

4. 방재계획

가. 호수재해

- 사업지는 침수재해 발생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배수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을 통하여 사업대상지 내 침수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
- 공사 시 외부우수의 공사장 내 유입으로 인한 홍수 및 토사유출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침사지, 가배수로, 비닐보호막 등을 설치하여 재해영향을 저감토록 계획
- 운영 시 우수유출 저감을 위하여 저류시설(지하저류조), 침투시설(옥상녹화, 투수포장 등)을 계획

나. 지진재해

-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건축계획 수립 및 대피시설, 대응시스템 등을 구축
- 지진 등 재난발생 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비 실시

5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·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

가. 토지세목조서

연번	소재지			지목	면적(㎡)	용도지역 및 지구	소유자	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	비고
	행정동	지번			편입 면적		성명	주소	지분	권리명세	권리자	주소	
		본번	부번										
1	신길동	1300	-	대	1,449.4	제2종일반주거지역, 일반상업지역	정오개발주식회사	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12(무교동)	1,380.25	-	-	-	-
2				대			강주형	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 13, 102동 604호	8.72	-	-	-	-

연번	소재지			지목	면적(㎡)	용도지역 지구	소유자	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	비고
	행정동	지번			편입 면적		성명	주소	지분	권리명세	권리자	주소	
		본번	부번										
3				대			서형수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1길 1, 디동 502호	8.72	-	-	-	-
4				대			박종진	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0, 대치동 개포2차 우성아파트 15동 402호	20.65	-	-	-	-
5				대			박지성	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222, 대치동 대치 아이파크 108동 2003호	31.06	-	-	-	-
6							1304	3	대	3.0	제2종일반주 거지역	정오개발 주식회사	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12(무교동)
합계					1,452.4								

나. 물건조서

연번	소재지			지목	물건의 종류	구조	규모		소유자	관계인			관련 지번
	행정동	지번					연면적 (㎡)	층수 (지하/ 지상)		성명 또는 명칭	주소	권리 종류 및 내용	
		본번	부번										
1	신길동	1300	-	대	건물 (사무실) (점포)	철근 콘크리트조	5,582.81	2/6	정오개발주 외 4인	-	-	-	-
합계							5,582.81	-					

다. 토지취득방법 : 사업대상지 내 필지는 본 사업의 시행자인 정오개발주식회사 외 4인의 소유임

라.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: 사업부지내 존치 건축물 및 공작물 없음

6.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: 해당 없음

7.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: 「건축법」 및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의거 해당 지자체인 영등포구청에서 감리자를 선정하여 감리업무 수행

8.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

구 분	공급토지		공급대상자	공급시기	비 고
	면 적(㎡)	구성비(%)			
합 계	1,452.4	100.0	-	-	-
주택건설용지	1,452.4	100.0	자체사용	승인 후	-

Ⅲ. 관계도면 : [붙임]

[붙임] : 관계도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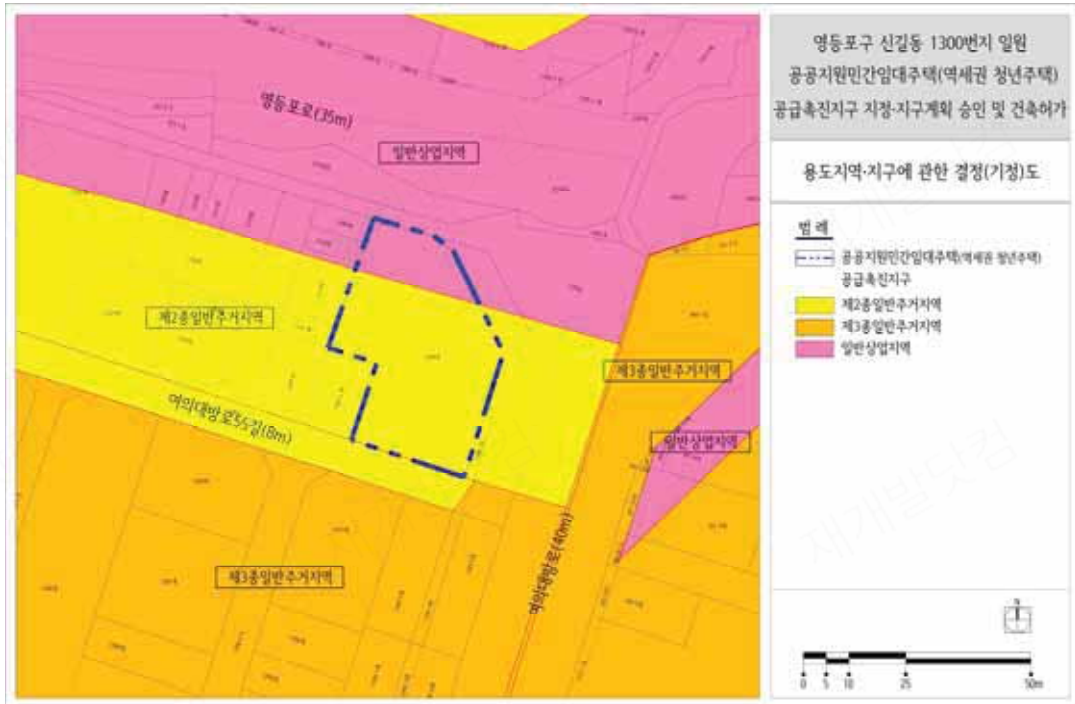
<공급촉진지구 결정도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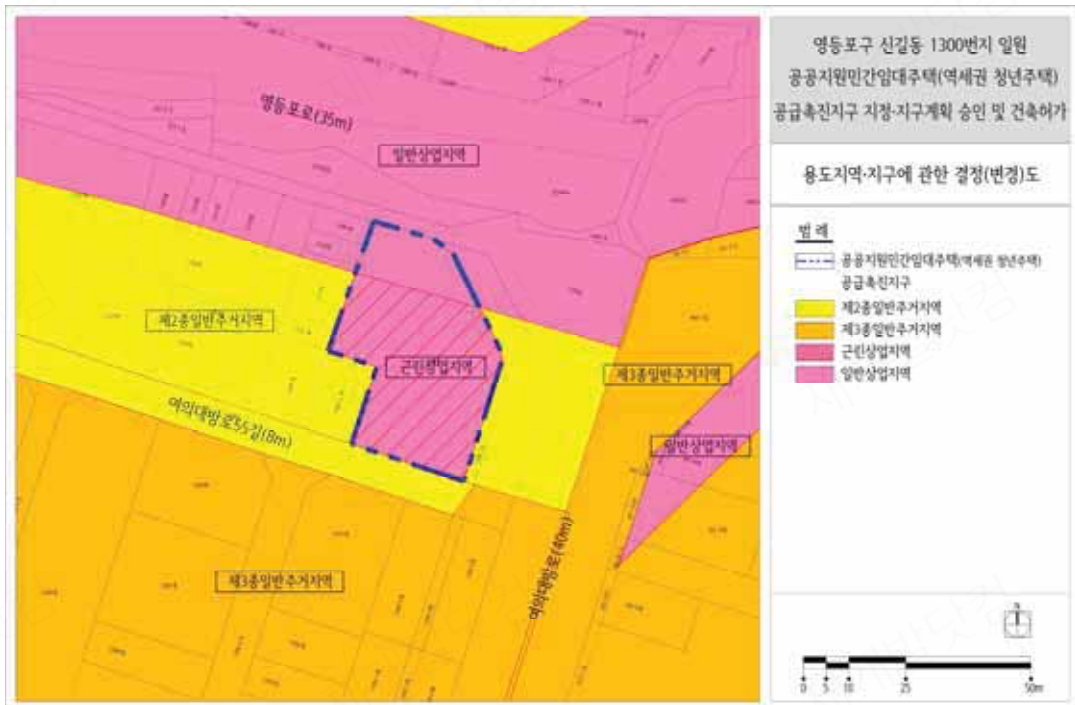
<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>



<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도(기정)>



<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도(변경)>



영등포구 신길동 1300번지 일원
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
공급촉진지구 지정·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

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

범례

-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
공급촉진지구
- 기반시설
- 도시계획도로(대로)
- 철도
- 녹지

0 5 10 25 50m